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-208호

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사업장 (제조)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4. 9. 12.



지정사업장(제조) 지정에 관한 고시

사업장	대표자	주소	전화번호	제조품목
대양전기공업(주)	서영우	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45	051-200-5373	선등

위 사업장은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4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선박용물건(선등)에 대한 지정사업장(제조)으로 지정 되었음을 알립니다.